

의안번호	2200069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4.6.4.
추 계 번호	24B035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 및 보급하며,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200만원, 2029년 1억 1,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억 7,800만원(연평균 1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 의 제정 및 보급(안 제21조)	55	—	—	—	—	—	—
표준계약서의 보급 (안 제22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32	111	111	111	111	678	136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적절한 보수 등의 지급이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 1) 안 제19조(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등) ①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약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2) 안 제19조(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등) ② 제1항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게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하는 사업주 및 일하는 사람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함(제2항)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의 수립·시행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조정·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4항)	의무규정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0조(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보수, 기본적 권리 등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제19조제1항1)의 단체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 또는 제19조제1항의 단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제1항)	의무규정
		제19조제2항2)에 따른 협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단체 또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로부터 부당해지 등을 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21조(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의 내용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22조(표준계약서의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23조(감독기관)	이 법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제1항)	의무규정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25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 이 법과 보호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8조(공제회 등의 설립 및 지원)	일하는 사람은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 증진 및 일하는 사람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공제회 등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일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회 등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등(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8조(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20조(이의 제기 및 분쟁해결)	—	• 미대상 —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21조(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	• 유사사례 참고 — 지침의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5	안 제22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 유사사례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산출

3)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23조(감독 기관)	—	• 미대상 －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³⁾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과 하위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으며,⁴⁾ 사업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⁵⁾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을 시행 － 따라서 제정안 제23조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25조(행정 지도 및 시정명령 등)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8	안 제28조(공제회 등의 설립 및 지원)	×	• 미첨부 － 장래에 발생할 공제회 지원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성) 제정안에 따른 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임
 - 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5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 10명(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 (단가)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⁶⁾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1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지침의 제작 및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토대로 산출
 - 지침의 제작 및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5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가정
 - 지침의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원/건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표 3] 지침의 제작 및 개발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고용상 연령차별 차별판단지침 등 업무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	2020	40
통합적 돌봄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지침서 개발	보건복지부	2023	70
평균			55

자료: 나라장터, 2023년 5월 8일 접속

[표 4]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추가재정소요	55	—	—	—	—	55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22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표준근로계약서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5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건

[표 5] 표준계약서의 개발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2021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1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2024년 5월 23일 접속

- 이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한 비용은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보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유사사례의 평균금액을 준용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매년 2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연구용역 5,000만원/건

[표 6] 표준계약서 보급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2024	50
경기도 표준계약서(프리랜서 강사) 개발 및 보급	경기도	2024	50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서울특별시	2024	49
평균			50

자료: 나라장터, 2024년 6월 3일 접속

[표 7] 표준계약서의 보급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추가재정소요	165	99	99	99	99	563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 및 보급하며,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200만원, 2029년 1억 1,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억 7,800만원(연평균 1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 의 제정 및 보급(안 제21조)	55	—	—	—	—	—	—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22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32	111	111	111	111	678	136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